

의안번호	2211176
의 퇴 인	이광희 의원
회 답 일	2025. 7. 10.
추계번호	25F35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추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세 세수는 2년간 총 321.2만 원(연평균 160.6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2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6~2027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취득세 및 재산세, 2026~2027년

(단위: 만 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안 제53조 추가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	-	0	0
	재산세	160.6	160.6	321.2	160.6
합계		160.6	160.6	321.2	160.6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3조 추가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추가 신설 - 감면율: 취득세 및 재산세 100% 면제 - 적용기한: 2027.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3조 추가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2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6~2027년까지 발생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조세지출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액은 160.6만 원 수준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 (개정연혁) 2010.3.31.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규정함에 따라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마련하여 감면기한 등을 개정
 - 2007.12.31. 신설: 구 「지방세법」 제288조제1항제9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¹⁾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을 추가 신설하여,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
 - 2011.12.31. 일부개정: 임대용부동산을 감면대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2.12.31.까지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2013.1.1. 일부개정: 일몰기한 연장
 - 2023.3.14. 일부개정: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
 - 적용기한: 2027.12.31.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신탁”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

□ (감면실적)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보유한 재산 현황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2024.12.31.기준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보유한 재산은 ‘이상 옛집 터’ 외 13개소

[표 2] 국민신탁법인 보유재산 현황

구분	취득연도	명칭	소재지
보전재산	2009	이상 옛집 터	서울 종로구 통인동
	2010	윤경렬 옛집	경북 경주시 인왕동
	2011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경기 군포시 속달동
	2022	고흥 죽산재	전남 고흥군 동강면 노동리
자정기탁재산	2011	윤경렬 옛집 주변동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2011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 주변농지	경기 군포시 속달동
	2016	이상의 방(이상의 집 증축 건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수탁재산	2008	구 보성여관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2008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010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부산 동구 수정동
	2014	대전 소대현·호연재 고택	대전 대덕구 송촌동
	2019	인천 조흥상회	인천 동구 금곡동
	2021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일반재산	2021	고창기념관	경북 경주시 인왕동
합계		14 개소	

자료: 문화유산국민신탁 (<https://nationaltrustkorea.org/>) 누리집, ‘부동산 재산 현황(2024.12.31.)’ 참조

○ 최근 5년(’19~’23)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은 총 8,379만 원(연평균 1,675.8만 원)

[표 3] 국민신탁법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 2019~2023년

(단위: 만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취득세	—	—	—	937	—	937
재산세	1,598	1,571	1,721	1,493	1,059	7,442
합계	1,598	1,571	1,721	2,430	1,059	8,379

자료: 통계청, 「비과세 감면현황」, 각 연도

2) 추계방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2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하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조세지출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국가유산청과 환경부가 지정한 최근 5년('20~'24)간 국민신탁단체의 현황과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현재 국가유산청과 환경부가 지정한 국민신탁단체는 총 3곳
 - －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사단법인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표 4] 국민신탁단체 지정 현황 및 보유자산

국민신탁 단체		자산분류	취득연도	자산내역
국가 유산청	(재)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주택	2002	1호 최순우 옛집(서울 성북구)
		주택	2006	2호 도래마을 옛집(전남 나주시 다도면)
		주택	2006	3호 권진규 아틀리에(서울 성북구)
	(사) 한국국가유산 지킴이연합회	—	—	—
환경부	(사) 한국내셔널 트러스트	토지	2016	전남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산 37-3
		토지	2019	경기 연천군 중면 황산리 131 외 1건
		토지	2010	경기 연천군 중면 적거리 산 145 외 2건 ¹⁾
		토지	2004	강원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95
		주택	2006	강원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95
		토지	2012	강원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96-4
합계		12건		

주: 1)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8조제2조제1호에 의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
자료: 국가유산청 및 환경부 제출자료

- 최근 5년('20~'24)간 국민신탁단체의 취득세 납부내역은 없으며, 재산세는 총 803만 원(연평균 160.6만 원) 납부

[표 5] 국민신탁단체의 지방세 납부내역: 2020~2024년

(단위: 만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취득세	—	—	—	—	—	
	재산세	113	134	157	137	138	679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취득세	—	—	—	—	—	
	재산세	23	24	27	25	25	124
합계		136	158	184	162	163	803

자료: 국가유산청 및 환경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라 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세 세수는 2년간 총 321.2만 원(연평균 160.6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2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6~2027년까지 발생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취득세 및 재산세, 2026~2027년

(단위: 만 원)

		2026	2027	누적	연평균
안 제53조 추가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	-	0	0
	재산세	160.6	160.6	321.2	160.6
합계		160.6	160.6	321.2	160.6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